

의료법			번호: IV - B - 5		
제 목	국문	개방병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고찰			
	영문	A Legal Review for Improving Attending System			
저 자 및 소 속	국문	김계현 ¹⁾ , 신동배 ²⁾ , 손명세 ³⁾ 연세의대 의료법윤리학과, 신우정형외과,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영문	Kye-Hyun Kim, Dong-Bae Shin, Myong-Sei Sohn Department of Medical Law and Ethics Medical Collage of Yonsei University ¹⁾ , Synwoo Orthopedic Surgery ²⁾ ,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³⁾			
분 야	보건관리 의료법	발 표 자	김계현	발표형식	구 연
			일반회원		
진행상황	연구중				
<p>1. 연구목적</p> <p>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불합리성을 시정하고 1차의료기관의 기능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되어 왔던 개방병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2000년 1월 12일 의료법의 개정으로 마련됨에 따라(법제32조의3 (시설등의 공동이용)) 개방병원제도(Attending System)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 의료자원 공동활용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 조항을 이용하여 개방병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30개 기관을 확정하여 시범, 운영중이며 2002년 12월까지의 시범사업의 결과 드러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개방병원을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개방병원제도는 종합병원에 있어서 유희병상과 장비인력을 활용하여 수입 증대를 도모하고 개원의에게는 시설 투자 등 초기투자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고난도의 의료기술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며 단골의사를 계속하여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국가적으로도 의료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고 종합병원의 병상과잉을 해소하고 과도한 의원의 의료장비 보유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개방병원제도는 의료계와 국민들이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현행 의료전달체계와 의료수가체계의 적용이 용이치 않은 실정이고,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뒷받침되어야 할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문제점들이 남아있다.</p> <p>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방병원제도가 순기능을 할 수 있는 주요정책방향들을 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p> <p>2. 연구방법</p> <p>본 연구에서는 개방병원제도와 관련된 현행 법률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법률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며 세부적으로는 개방병원제도와 관련된 법적 문제들 즉 의료사고 책임문제의 법제화, 개방병원 관련된 광고의 허용 문제, 개방병원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행정적 뒷받침 등의 문제들을 파악하고 이를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각종 문헌과 정책자료를 비교검토하고, 외국과의 비교법적 고찰을 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한 정책대안(입법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p>					

3. 연구 결과

개방병원이란 지역사회 의 개원의사가 2·3차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인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의료전달체계로 CT, MRI 등 고가의료장비의 등의 공동이용과 수술 또는 입원 필요시 개방병원의 유허 수술실과 입원실을 활용하여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개방병원제도가 정착된다면 현재의 불명확한 의료전달체계의 역할분담이 합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의료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방병원제도와 관련된 법적 문제들 의료사고 책임문제의 법제화, 개방병원 관련된 광고의 허용 문제, 개방병원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행정적 유인책과 뒷받침의 마련이 시급하다 할 수 있다. 즉 의료사고의 발생시 개방병원과 개원이 사이에 책임에 관한 분쟁이 있을 수 있으나 제도적 장치가 없어 의료법과 의료분쟁조정법에 이를 명기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의 의료광고와 관련된 의료법의 규정에 있어서도 개방병원과 관련된 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어 개방병원의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와 제도의 정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개방병원제도의 순기능 중의 하나인 개방병원 통한 지역거점병원을 육성하고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 실현을 유도하기 위해 인력 및 시설지원 등을 통해 자원공동활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재정적, 행정적 유인책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의 법해석의 범위를 명확히하여 개방병원제도가 순기능을 할 수 있고, 세부적으로는 개방병원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운영 지침 등의 마련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4. 고찰

보건의료서비스 시장 개방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불합리한 의료전달체계의 시정과 개방병원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불명확한 법적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방병원제도의 활성을 위한 법적, 행정적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률의 정비와 정책 방향에 대한 모색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보다 적극적으로는 개방병원의 운영에 따른 세부 지침 등의 마련이 있을 수 있는데 관련 협회와 학회 차원에서의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기반이 되어 우리의 의료환경과 의료현실을 반영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